

성 남 시 의 회 행 정 사 무 감 사 및 조 사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2003. 7. 2

제 출 자 유철식 의원등9인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인 “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”를 “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”로 하고, “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”를 삭제함(안제5조제1항제2호나목)

□ 관련근거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증 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나목중 “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”를 “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”로 하고,
“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(생략) 1~2(생략) 가. (생략) 나. 사업소 :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 <u>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</u>, 성남시종합 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차량 등록사업소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<u>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</u> 다.(생략) 3~4(생략)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(현행과 같음) 1~2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사업소 :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 <u>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</u>, 성남시종합 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차량 등록사업소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다.(현행과 같음) 3~4(현행과 같음)